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1나5292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주

변 론 종 결 2021. 8. 20.

판 결 선 고 2021. 9. 17.

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가단240681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서 2019. 2. 22.1)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25. 접수 제319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을 제9 내지 15호증)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허준서, 판사 강희석, 판사 오연정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M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N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10가구)

1층 133.07㎡

2층 133.43㎡

3층 133.43㎡

4층 115.36㎡

지층 133.07㎡

옥탑 11.52㎡

(연면적제외) 물탱크실, 계단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강서구 M 대 27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표시 : 제2층 O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66.27㎡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271분의 29.85

위 부동산 중 5분의 1지분. 끝.

1) 청구취지에는 ‘2019. 1. 19.’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원인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2019. 2. 22.’의 오기임이 분명하다.